

검 토 보 고 서

■ 조례명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 지방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적정 정원을 새로이 정함.
- 정원 관리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 구분하여 정원 조정의 탄력성 확보

■ 주요내용

- 정원 관리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 함.
- 정원 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함.
 - 집행기관의 정원 : 647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 16명
- 정원초과 현원은 2000. 12. 31까지 이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검토결과 (의견)

- 기구 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에 따라 99명 (12.99%)의 인원을 감축하였으나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만 구분되어 있으므로, '정원조례시행규칙' 제정시 부서간의 업무 협평에 맞는 정원을 책정토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2000년 말까지 잉여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임을 전제하면서 본 조례안이 내용과 형식은 상위 법규에 위배되거나 개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과 의회 사무과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47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6명

제3조중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을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 12. 31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